##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원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265

발의연월일: 2024. 11. 5.

발 의 자:이원택·오세희·이기헌

이병진 · 임미애 · 서삼석

문대림 • 이수진 • 김윤덕

이춘석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보험료, 의료비,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나, 이동통신요금은 월별로 지출의 약 5%를 차지하는 고정비용임에도 특별세액 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있음.

특히 20세 이하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비 중 이동통신 비용의 비율 및 상승률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므로 가구의 가처분소 득 증가를 위한 세제지원으로서 자녀를 위한 이동통신비용 지출에 대 한 세액공제 특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이동통신요금 지출금액의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 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국민의 조세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, 20세 이하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10으로 하는 특 례를 적용하여 자녀 출산·양육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(안 제59조의 4).

##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9조의4제5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6항(종전의 제5항) 중 "제3항까지의 규정"을 각각 "제3항까지 및 제5항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7항(종전의 제6항) 중 "제4항까지의 규정"을 "제5항까지"로하며, 같은 조 제10항(종전의 제9항)제1호 중 "제6항"을 "제7항"으로하고, 같은 조 제11항(종전의 제10항) 중 "제9항까지의 규정"을 "제10항"으로 한다.

- ⑤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(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)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을 지급한 경우 그 금액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 두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. 다만, 공제액이 연 6만원(제2호의 경우에는 3만원)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.
- 1.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20세 이하 자녀(입양자 및 위탁 아동을 포함하며, 혼인한 사람은 제외한다): 100분의 10
- 2. 제1호 외의 경우: 100분의 6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이동통신서비스 요금에 대한 특별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) 제59 조의4의 개정규정 중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 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다른 법률의 개정)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제3호 중 "제9항"을 "제10항"으로 한다.

제12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제9항"을 "제10항"으로 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9조의4(특별세액공제) ① ~	제59조의4(특별세액공제) ① ~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⑤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
	공제대상자(나이 및 소득의 제
	한을 받지 아니한다)를 위하여
	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
	정하는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을
	지급한 경우 그 금액에 다음
	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
	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
	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
	세액에서 공제한다. 다만, 공제
	액이 연 6만원(제2호의 경우에
	는 3만원)을 초과하는 경우 그
	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
	<u>한다.</u>
	1.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
	해당하는 20세 이하 자녀(입
	양자 및 위탁 아동을 포함하
	며, 혼인한 사람은 제외한다):
	<u>100분의 10</u>
	<u>2. 제1호 외의 경우: 100분의 6</u>
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	<u>⑥</u> 제3항까지 및

절을 적용할 때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혼인·이혼·별거·취업 등의 사유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종전의 배우자·부양가족·장애인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현재 65세 이상인 사람을 위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금액에 제1항부터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율을적용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.

-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는 해당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.⑦・⑧ (생 략)
- ⑨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(이 하 "표준세액공제"라 한다)한 다.

제5항
<u>제3항까지 및 제5항</u>
 <u>⑦</u> <u>제5항까지</u>
<u></u>
<u>⑧</u> · <u>⑨</u> (현행 제7항 및 제8항
과 같음)
<u> 10</u>

- 1.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1 <u>제6항</u>, 제52조제8항 및 「조 세특례제한법」 제95조의2제2 항에 따른 소득공제나 세액공 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: 연 13만원
- 2. (생략)
- ① 제1항부터 <u>제9항까지의 규</u> <u>정</u>에 따른 공제를 "특별세액공 제"라 한다.
- ⑪ (생 략)

1
<u>제7항</u>
2. (현행과 같음)
<u> ①</u> <u>제10항까지</u>
① (현행 제11항과 같음)